

2.2.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2.2.1. 배경 및 목적

-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후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 제도를 정비하였다.
- 즉, 허가·신고대상을 확대하고(법 제7조제1항), 허가시설의 유효기간 도입(법 제7조의3), 하천구역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 강화(법 제7조의2), 신고시설의 이용제한(법 제8조제3항) 등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 불법시설이라도 원상복구 명령 전 신고를 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15조제3항), 허가시설 또는 신고시설의 시설변경을 통하여 신고대상 또는 허가대상이 될 경우 새로이 신고 혹은 허가를 받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7조제6항, 법 제8조제2항), 신고시설에 대한 영향조사 실시(법 제8조제3항), 신고효력의 상실(법 제8조의2) 등 인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2.2.2. 적용범위

가. 허가대상

-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국방·군사시설, 농·어업용,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 지하수개발, 비상급수용을 제외한 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 지하수보전구역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HELP ✓ 동 규정은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 수위저하 방지 등 지하수 수량관리를 위한 조항으로서, 시행령 개정('14년 11월)으로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질저하가 우려되어 지정되었거나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신고대상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로(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 지하수보전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 범위에서 양수능력 조절 가능
-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HELP ✓ 이 경우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이 끝난 후에는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등 지하수법 제7조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토출관직경, 양수능력 등 신고대상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

-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HELP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인이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시설을 비상급수용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개발·이용에 따른 허가/신고 여부를 적용한다.

- 상기 경우 외에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지하수보전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 범위에서 양수능력 조절 가능

HELP ✓ 토출관은 펌프와 연결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이 되는 토출관직경은 펌프와 연결된 배관의 관경으로 한다.

다. 허가·신고 면제대상

-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HELP ✓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이란 단독 가구 혹은 다수의 가구가 순수한 의미의 가정생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영리인 경우로 제한한다.

-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

표 2.1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이하	신고
국방·군사시설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

라. 지하수의 용도

- 지하수의 용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로 구분한다.
- 생활용수는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를 제외한다. 생활용수에는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농업·생활겸용 등이 포함된다.
 - 가정용은 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